

생활관비(관리비, 식비)징수 및 환불지침

제 정 2005. 2. 1.(지침 제 1호)
 1차 개정 2009. 11. 16.(지침 제 1호)
 2차 개정 2010. 3. 5.(지침 제 1호)
 3차 개정 2011. 2. 17.(지침 제 1호)

1. 기본원칙

- 가. 개관기간을 학기별로 솔피관·가람관은 16주, 솔빛관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25주로 한다
- 나. 생활관비 징수기간은 관리비는 1주 단위로 계산하고, 식비는 2주 단위로 계산한다.
- 다. 생활관비 환불기간은 관리비는 4주 단위로 계산하고, 식비는 2주 단위로 계산한다. 그러나 솔빛관의 경우, 계속적으로 학업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할 때에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 계속적으로 학업이 불가능 할 때(자퇴, 휴학 등)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라. 퇴사 사유발생 2주 전에 퇴사원서를 생활관 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을 시 환불은 퇴사일 기준으로 2주 후에 지급한다.
- 마. 생활관비 계산시 천원 미만은 입사의 경우 절상하고, 퇴사의 경우 절사한다.

2. 생활관비 징수

가. 관리비

- 1) 솔피관·가람관 : 16주로 하여 1주 단위로 계산함

징수 사유발생일	징수 금액	비고
◦ 개관일로부터 1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	
◦ 1주 경과 ~ 2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15/16	
◦ 2주 경과 ~ 3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14/16	
:	:	
◦ 14주 경과 ~ 15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2/16	
◦ 15주 경과 ~	◦ 관리비 전액의 1/16	

- 2) 솔빛관(BTL) : 방학기간을 포함한 25주로 하여 1주 단위로 계산함

징수 사유발생일	징수 금액	비고
◦ 개관일로부터 1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	
◦ 1주 경과 ~ 2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24/25	
◦ 2주 경과 ~ 3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23/25	
:	:	
◦ 23주 경과 ~ 24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2/25	
◦ 24주 경과 ~	◦ 관리비 전액의 1/25	

나. 식비

징수 사유발생일	징수 금액	비고
◦ 개관일로부터 2주 이하	◦ 식비 전액	
◦ 2주 경과 ~ 4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7/8	
◦ 4주 경과 ~ 6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6/8	
:	:	
◦ 12주 경과 ~ 14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2/8	
◦ 14주 경과 ~ 16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1/8	

3. 생활관비 환불(공통)

가. 관리비

환불 사유발생일	환불 금액	비고
◦ 개관일로부터 4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3/4	
◦ 4주 경과 ~ 8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2/4	
◦ 8주 경과 ~ 12주 이하	◦ 관리비 전액의 1/4	
◦ 12주 경과 ~	◦ 환불하지 아니함	

나. 식비

환불 사유발생일	환불 금액	비고
◦ 개관일로부터 2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7/8	
◦ 2주 경과 ~ 4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6/8	
◦ 4주 경과 ~ 6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5/8	
◦ 6주 경과 ~ 8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4/8	
◦ 8주 경과 ~ 10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3/8	
◦ 10주 경과 ~ 12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2/8	
◦ 12주 경과 ~ 14주 이하	◦ 식비 전액의 1/8	
◦ 14주 경과 ~ 16주 이하	◦ 환불하지 아니함	